

1998年度 運營委員會 所管
行政事務監査計劃書

1. 감사의 목적

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'99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,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·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기능,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기관 감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음.

※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6조

2. 감사일정 : 1998. 11. 30. (월) (1일간)

※일정은 위원회 일정상 변동될 수 있음

3. 감사대상기관

위원회 선정대상기관	본회의 의결대상기관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	없 음

4. 감사위원회 편성

구 분	소속정당	위 원 명	사 무 보 조 직 원
위 원 장	국민회의	이 용 부	전문위원 안 석 수 · 5급 신 형 민 · 7급 박 성 문 · 7급 김 학 성 안내직원 기능9 김갑연 기능10 강지영 속 기 사 (2명) 녹취요원 (2명)
간 사	국민회의	이 성 호	
"	한나라당	조 상 훈	
위 원	국민회의	김 노 진	
"	"	김 명 수	
"	"	김 성 규	
"	"	송 미 화	
"	"	송 태 경	
"	"	이 강 옥	
"	"	주 세 만	
"	"	최 충 민	
"	"	허 광 태	
"	한나라당	김 기 성	
"	"	임 동 규	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시	감 사 대 상 기 관	장 소	비 고
'98. 11. 30(월) 14 : 00	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	운영위원회 회의실	관계공무원 증인출석

※일정은 위원회 일정상 변동될 수 있음.

<p>6. 주요 감사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명 :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○ 감사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자료 확인 - 현황보고 청취 - 시책질의 - 기타사항 ○ 주요 감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- '98년도 예산, 집행현황 - 청원 및 민원서류 접수, 회부 및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- '98국세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- 시의회보 홍보물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 - 의원,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-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 필요한 사항 <p>7.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(예시)</p> <p>가. 1998년도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</p> <p>나. 1997회계년도 세입·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</p> <p>다. 1998회계년도 세입·세출 집행현황</p> <p>라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</p> <p>※ 각 감사위원은 서류(자료) 제출요구목록을 '98. 10. 31.까지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</p> <p>※ 위원장은 의장에게 자료요구</p> <p>8. 감사 요령</p> <p>가. 감사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, 현황보고·청취, 시책질의·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(2)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<p>나. 감사자료 제출요구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. (2)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서식(서류제출 요구목록)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'98.10.31까지 제출 (3) 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,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<p>다. 증인 등의 출석요구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및 공보실장, 담 	<p>당관 (3명)</p> <p>※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</p> <p>(2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인출석요구 실비보상 (조례제8조) · 과태료 부과 (조례제9조) · 고발 및 준용사항 (조례제10조, 11조) <p>라. 감사진행순서 (예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감사실시 선포(위원장) (2) 위원장 인사 (3) 의회사무처 간부선서 (4) 의회사무처장 인사 및 간부소개 (5) 업무현황보고 청취 (6) 시책질의 및 답변(현지확인, 증인청취) (7) 감사종료 인사(위원장) (8) 감사종료 선언 <p>마. 유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중 운영위원회 소관사무 (2) 감사의 한계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○ 재판에 계류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(3) 이해관계인의 제척·회피 (동법시행령 제17조의7) <p>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</p> (4) 감사상의 주의의무(동법시행령 제17조의8) <p>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</p> (5) 감사공개원칙 (동법시행령 제17조의9) <p>감사는 공개하되, 본회의·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</p> (6) 현지확인, 서류제출, 관계인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일 전에 통보(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) <p>9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</p> <p>가. 방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
--	---

(2)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·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,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.

나. 작성방법

- (1)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
 - (2)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
 - (3)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
 - (4)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 송부
- ※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최종결과 보고서 채택
- (5) 본회의 의결

1998年度 서울特別市議會
行政事務監査計劃書

1. 목적

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'99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,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·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기능,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기관 감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,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음.

※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6조

2. 감사기간

- '98.11.21(토)~11.30(월) 10일간

3. 감사대상기관

위원회명	위원회 선정기관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·제2호·제4호)	본회의의결 대상기관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·제5호·제6호)
운영	· 의회사무처	없 음
행정자치	· 공보관 · 감사관 · 비상기획관 · 행정관리국 · 소방방재본부 · 공무원교육원	없 음
기획경제	· 기획예산실 · 시정개혁단 · 산업경제국 · 시립대학교 · 전산정보관리소 · 농촌지도소 · 공업시험소 · 시립기능대학 ·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·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	·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· 서울산업진흥재단 · 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· 시립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· 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·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· 시립노동복지회관